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3.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8월 31일, 신정훈의원 등 62인

나. 회부일자: 2022년 9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2.9.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09.13.)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9.26) 상정

제3차 안전조정위원회(2022.10.12)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10.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정훈의원)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써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국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국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6조, 제1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승남)

시장격리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사항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 등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윤준병)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